

우여곡절로 결제하는 유행일뿐이다

고	등록번호 432-4	기 안 용 지	제작국경 5 호 국·장·재·체·체·사·장
고	제작번호 465		
제작기한	6. 23	기안자 김동갑	결제자 도시계획국장
제작일자	1987. 6. 23	기안자 서명	결제자 서명
보존년한	1992. 6. 23	기한 67. 6. 23.	제작일자 67. 6. 23.
보	구획정리과장		
조	본지 계장	공고제 85호	
기			
관			
협조	계획계장 정부부총	법률담당 문서 계장	법무감 총무과장
유 선 참	각 부처 참조	통 발 경 제 화 장 무	법 무 장 무
제 목	본지 예정지 일부 변경 지정	6월 23일 서울특별시 토지과	6월 23일 서울특별시 토지과
제 1 안 내부결재			
1. 수유 오지구획정리 제 2 차 흰지 예정지를 서울특별시 공고 제 85호 ( 65. 8. 13 )로 지정 공고한바 있으나 동 지구 제 119 블록내 사무 착오 로 인한 부족 흰지 사실이 ( 별첨 복명서 참조 ) 발견 되었가 아래에 의하여 일부 흰지 예정지를 변경 지정하고자 합니다.			
가. 종전 토지 ( 미아동 215-2, 220-1, 225-2 일 ) 1,552 평에 대하여 1,414. <sup>60</sup> 평의 흰지 예정지를 지정하여야 할것이나 면적 계산 착오 로 100평이 부족한 1,314. <sup>60</sup> 평을 지정하였음.			
나. 본래 면적 100평은 동 지구 70 블록내 채비지 215평을 3-1 [ <sup>상이 요구는 정도면 하의 것도 정도 이상</sup> 의 것으로 지시하지 않을 것이다 ]			

15-2

부속 면적에 해당되는 면적을 추가 지정함.

제 2 안

공  
고

서울특별시 흰지 예정지 일부 변경 공고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수유호지구획정리 지구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  
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흰지 예정지를 변경하고 관계  
조서 및 도면을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및 성북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 
소유자와 관계인의 종람에 공지함.

1967. 1967. 6. 23

서 울 특 별 시 장

제 3 안

수신: 동대문구 용두동 119의 33 이정섭 발신: 시장

제목: 흰지 예정지 변경 지정 공고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수유호지구획정리 지구내 귀하 소유 토지에  
대하여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제 55조 규정에 의하여 별지 지정서와 같이 흰  
지 예정지를 일부 변경 지정하였기 빙고 합니다.

첨부: 1. 공고문 사본 1부.

2. 흰지 예정지 변경 조서 1부.

제 4 안

수신: 성북 구청장

발신: 시장

제목: 흰지 예정지 일부 변경 지정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수유호지구획정리 지구내 일부 지역에



대한 흔지 예정지를 별첨 공고문과 같이 변경 지정 ~~하고~~ 관계 조서를 송부  
하오니 관계인의 종람에 공할것이며 사무 처리상 작오 없기 바람.

- 첨부. 1. 흔지 예정지 변경 지정서 1부.  
2. 흔지 예정지 지정도 1부.  
3. 공고문 사본 1부.

제 5 안

수신 공보실장

발신 과장

제목 흔지 예정지 변경 지정 공고

수도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일부 지역에 대한 흔지 예정지를 별  
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변경 지정 하였으니 시보에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  
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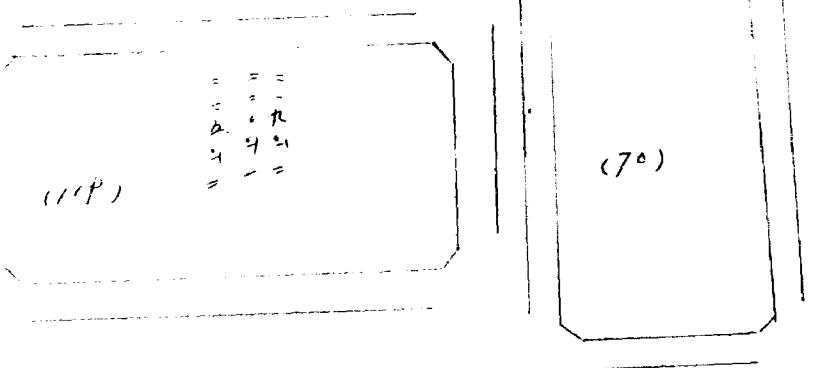
첨부. 공고문 사본 . 끝.

## 관자예정지법경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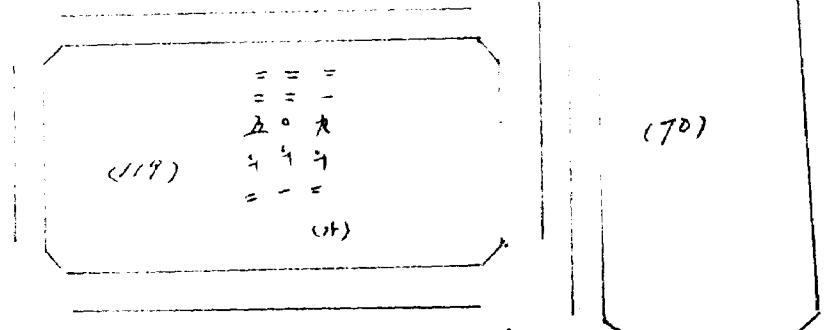
131

$$S = \frac{1}{12^2 \pi}$$

141    21    31



141    21    31



5-5

22